

의안번호	제 667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7
----------	-----

제출연월일 : 2014. 6.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위헌결정 판결일: 2012.8.23.)에 따라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선정 등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정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1) 특별장학생의 범위에서 중학교 입학대상자 제외
- 2) 특별장학생의 정수에서 중학교 제외

나. 특별장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 특별장학생의 선정에서 중학교 제외

다.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폐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4. 4. 18. ~ 5. 8.):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교의 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또는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를 “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또는 품행이 특히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 서도 학업에 노력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2조제3호 중 “자”를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타의모범이 되는 자”를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의 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 또는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는 중·고등학교의 입학대상자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노력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중학교 제1학년 입학대상자에 한한다) 2.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대상자에 한한다) 	<p><u>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또는 품행이 특히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u>----- ----- -----.</p> <p>제2조(특별장학생의요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노력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현행	개정안
<p>3.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u>자</u></p> <p>4. 선행, 효행,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u>타의 모범이 되는 자</u></p> <p>5. 승계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u>타의모범이 되는 자</u></p>	<p>3.----- -----<u>학생</u></p> <p>4.----- ----<u>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u></p> <p>5. ----- -----<u>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u></p>
<p>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u>중학교 및 고등학교당 1명의 학생으로 한다.</u></p>	<p>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 -----<u>고등학교</u> -----.</p>
<p>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 후보자 추천은 각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u>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u></p> <p>② <u>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u></p>	<p>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 ----- ----- -----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u></p>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u>----- ----- ----- ----- -----<u>2개월</u>----- -----.</p>
<p>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u>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u>교육감 소속으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관계법령

-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등 위헌소원
[2010헌바220, 2012.8.23.]

【주문】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요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구 초·중등교육법[시행 2012.3.1.] [법률 제11219호, 2012.1.26.]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3.24.>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단순위헌, 2010헌바220, 2012.8.23.,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 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교육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